

가을 재확산방지특별대책

2021년 9월 29일

가을 재확산방지특별대책

백신접종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검토되고 있어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한 대책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전문가들로부터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재확산의 우려가 있음 또한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긴급사태선언종료 후 급격한 이동 증가를 막고, 조기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대처방안에 입각한 단계적 완화 관점 등을 쫓아 특별대책을 모색하려 한다.

※아울러 향후 <백신·검사패키지> 기술실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행동제한 완화를 특례로 다루겠다.

대 상 지 역 홋카이도 전지역

기 간 2021년 10월 1일(금)~10월 31일(일)

우리 도의 중심 지역이며, 타 지역과의 왕래가 많은 삿포로시는 <중점지역>이므로 감염방지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중 점 지 역 삿포로시

기 간 2021년 10월 1일(금)~10월 14일(목)

※ 중점지역에 대한 요청·협력의뢰는 기간이 만료하면 종료하는 것(도 전체와 같은 대책 이행)이 원칙이나 신규감염자수가 인구 10만명 당 15명에 가까워지는 등 감염증가세가 보이면 대책 연장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한다.

도 전역
(삿포로 시 제외)

요청내용

(일상생활에서)

◆<3밀(밀폐·밀집·밀접)>, <감염위험이 높은 [5개 경우※]> 등의 방이나, 「사람간의 거리확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손 소독」을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음주를 수반하는 모임 등, 많은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 섭취, 마스크 없이 대화,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거처변경

(특히, 외출 시에는)

◆혼잡한 장소나 시간대를 피해 소수 인원으로 행동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할 때는 감염방지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고령자, 기초질환자, 일부 임신 후기 임산부

◆ 감염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샷포로시와의 불필요※한 왕래는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재료·의약품·생활필수품 구입, 필요한 직장 출근, 야외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왕래를 삼가해 주세요.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타 도부현과의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한다.(특조법제24조제9항)

◆귀성이나 여행·출장 등 타 도부현으로 이동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고 5명 이상의 회식은 삼가한다. 특히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분 등은 이동 시 체온 체크와 PCR검사를 받는 등 몸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발열 등의 증세가 있을 때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요청내용

(특히, 음식섭취 시에는)

◆감염 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음식점 등을 이용할 때는 음식점 등에서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음식은 4인이내 등 소수인원, 단시간으로, 과음 및 큰 소리는 금지하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침묵 식사 ~식사는 조용히, 대화시 마스크~> 실천) (특조법제24조제9항)

【홋카이도 방문을 검토 중인 분들께 드리는 협력의뢰】

협력의뢰
내용

◆홋카이도 방문시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고 성인 수 5명 이상의 외식은 삼가한다. 특히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 등은 이동할 때 체온 체크나 PCR검사를 받는 등 몸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홋카이도 방문을 자제한다. (협력요청)

【이벤트 개최에 관한 요청 · 협력의뢰】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1)

○인원수 상한(어느쪽이든 큰 쪽)

5,000명 또는 수용인수 **50%** 이내 (**10,000명** 이내)

특조법제24조제9항

○수용률

[10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2)

[5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3)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 중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2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섭취를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 (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3 록, 팝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 동일그룹 (5명 이내에 한함)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 즉 수용률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요청·
협력의뢰
내용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행사전후의 3밀 및 음식물 섭취를 방지하는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국가의 접촉확인 앱 (COCOA) 도입, 명부작성 등 추적대책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이벤트 또는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전국적인 이동이 예상되는 경우 개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협력의뢰)

◆이벤트 관련 시설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 시설은 시설 운영 시 이벤트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수 상한, 수용률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 (협력의뢰)

【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 협력의뢰】

요청 ·
협력의뢰
내용

- ◆ 재택근무 (텔레워크), 시차출근, 자전거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조치를 실시한다. (협력요청)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점은 감염방지대책 체크리스트 항목을 준수함과 동시에 한 그룹, 한 테이블을 원칙으로 인원수는 4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안내한다. (협력요청)
- ◆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가게에서는 노래방 설비를 비치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을 주로 취급하지 않는 가게에서 노래방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를 확보하고 환기를 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지킨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요청내용

- ◆ 위생관리매뉴얼 (2021. 4. 28 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시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학습활동은 실시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학생기숙사 등에서는 공용 공간 활용시 학생간 밀접하게 모이지 않는 등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어린 학생과 동거가족의 감염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학급·학년·전교 차원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때 온라인 학습 등으로 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기 곤란한 아동을 위해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운동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숙박학습 등) 중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은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여행지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부활동은 위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한다. 덧붙여 건강상태의 중복체크를 일상화하고, 전교생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지도체제를 확립, 대회 참가는 교장의 재량에 따르며 주최자 등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감염대책을 강구한 후 적절한 수업을 실시해 학습기회를 확보하고 학외활동 시 감염대책 및 주의환기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공립시설】

공립시설

- ◆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역 감염상황에 맞춰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중점지역

요청내용

(일상생활에서)

- ◆ <3밀 (밀폐·밀집·밀접)> <감염위험이 높은 [5가지 경우※]> 등의 방지만, <사람간 거리확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손 소독> <환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다. (특조법제24호제9항) ※ 음주를 수반하는 간친회 등, 많은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섭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화,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거처 변경

(특히, 외출시에는)

- ◆ 감염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히 2 1 시 이후의 외출을 삼간다. (특별법제24조제9항)

※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료·의약품·생필품 구입, 필요한 직장 출근, 야외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 주십시오. 또한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라도,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서 행동해 주십시오.

- ◆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고령자, 기저질환 있으신 분, 일부의 임신 후기이신 분

- ◆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은 최대한 자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귀성이나 여행·출장 등 다른 도부현으로 이동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고 많은 인원(5명 이상)의 회식은 삼간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 등은 이동 시 체온체크나 PCR검사를 받는 등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요청내용

(특히, 음식섭취 시에는)

- ◆ 감염방지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음식점이나 영업시간 단축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의 이용을 자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점 등을 이용할 때는 음식점 등에서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섭취는 4명 이내 등 소수인원, 단시간에, 과음을 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침묵식사 ~ 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 ~ 」의 실천) (특조법제24조제9항)

【삿포로 방문을 검토 중인 분들께 드리는 협력의뢰】

협력의뢰
내용

- ◆ 삿포로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고 성인 수 5명 이상의 회식은 삼가한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 등은 이동 시 체온체크나 PCR검사를 받는 등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삿포로 방문을 삼가한다. (협력요청)

【음식점 등에 드리는 요청】

대상시설

[음식점] 음식점 (주점 포함), 카페 등 (배달·테이크아웃 제외)
 [유흥시설] 카바레,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요청내용

-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 주류제공은 19시 30분까지로 하며 동일그룹의 동일 테이블에 대한 입점 안내는 원칙적으로 4인 이내로 한다.
 단, 홋카이도 음식점 감염방지 대책 인증제도의 인증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은 21시까지(주류 제공은 20시까지)로 하고, 동일 그룹의 동일 테이블에 입점 안내는 원칙적으로 4명 이내로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이나 감염방지대책 체크리스트항목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이 주 영업인 점포 등에 대해서는,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노래방 설비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3밀을 방지하고 환기를 확보하는 등 감염방지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

【음식점 증에 대한 지원금】 10월1일~10월14일까지 전기간(14일간) 협력해 주신 경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점포마다 35만엔~105만엔, 대기업: 1점포마다 최대 280만엔

【이벤트의 개최에 대한 요청 · 협력의뢰】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1)

○인원수 상한(어느쪽이든 큰 쪽)

5,000명 또는 수용인수 **50%** 이내 (**10,000명** 이내)

특조법제24조제9항

○수용률

[**10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2)[**5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3)※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 중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2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섭취를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 (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3 록, 팝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영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
동일그룹 (5명 이내에 한함)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 즉 수용률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요청·
협력의뢰
내용◆개최시간은 **21시**까지 (무관객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는 제외) (협력의뢰)◆주류의 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 포함)은, **20시**까지. (협력의뢰)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이벤트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국가의 접촉확인 앱 (COCOA) 도입, 명부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이벤트 또는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이벤트의 실시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전국적인 이동이 예상되는 이벤트는 개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 (협력의뢰)

◆이벤트 관련 시설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시
이벤트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수 상한, 수용률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 (협력 의뢰)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직장의 출근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재택근무 (텔레워크) 활용 및 휴가 활용 촉진 등의 방안을 실시하는 동시에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 출근이나 로테이션 근무, 자전거 통근 등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력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3미터를 방지하고 환기를 확보하는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정리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 주요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변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1시 이후, 야간소등한다. (협력의뢰)

【학교에 드리는 요청】

요청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2021. 4. 28 개정)에 의거하여, 학교교육활동에서는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감염위험이 높은 학습 활동은 실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또한 학생기숙사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공용공간을 활용에 의한 3밀상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 숙박학습 등)에 대해서는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의 실시를 신중히 검토함과 함께 여행지의 수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활동을 엄선(시간, 인원수, 장소, 활동 내용)하여 실시한다. 또한, 건강상태의 다중검사를 일상적으로 함과 동시에 감염방지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것 외에 대회 참가는 교장 판단 하에 실시하고 주최자 등의 감염방지대책을 엄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감염대책을 강구한 후 적절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기회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학외 활동 등과 관련된 감염대책이나 주의환기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공립시설】

공립시설

- ◆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하여 입장정리 등,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